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4857
----------	-------

발의연월일 : 2025. 12. 4.

발 의 자 : 서왕진 · 이해민 · 김재원
김준형 · 강경숙 · 황운하
차규근 · 김선민 · 박은정
백선희 · 정춘생 · 신장식
의원(12인)

주 문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당의 활동은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이자 헌정질서의 기반임.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헌법적·반민주적 목적을 위해 정당이 기능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음.

‘국민의힘’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시도 과정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하지 않고 이를 비호·동조한 중심 세력으로 기능하였음. 특히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 과정에서 당시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의 지휘 아래 다수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표결 참여를 거부하여 내란 행위를 방조하였으며, 윤

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구속영장 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등 법치주의를 전면적으로 훼손하였음.

최근에는 장동혁 당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며 위헌 비상계엄을 공개적으로 정당화하였음. 이는 명백히 위헌적인 비상계엄 시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임. 또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 특정국가 혐오 조장, 사법부 모욕, 내란 미화·선동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언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들 극단 세력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면서 국민주권 원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음.

이러한 국민의힘의 목적 및 활동은 헌법 제8조 제4항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요건을 충족함이 명백함. 이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민의힘의 위헌성은 현저히 중대하고 반복적이며 조직적임.

국회는 국민의힘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부는 헌법상 부여된 정당해산심판 제소 의무를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됨. 정부가 국민의힘의 위헌적 행위를 방치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심각히 위반하는 것임.

이에 국회는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하여 즉각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고, 민주공화국의 회복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하여 모든 정치·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결의함.

제안이유

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시도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내란적 사건이었음.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비호하였음. 특히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에서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의 지휘 아래 다수 의원이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해 계엄군의 국회 점령과 내란 실행이 용이해졌다는 평가가 가능함. 이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키며 헌정 질서를 위협한 행위였음.

나. 2025년 1월 6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가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였음. 이러한 집단적 위력행사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제87조(내란), 제91조(국헌문란)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생중계된 영상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그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음.

다. 국민의힘은 이후에도 부정선거 음모론 유포,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조장, 사법부에 대한 모욕적 언동, 비상계엄 미화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동을 지속해 왔음. 특히 장동혁 당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은 위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적 행위를 미화하는 것으로, 헌법질서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라 할 수 있음.

라.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히 위배하고 폭력적 수단을 용인·조장하며 조직적·지속적으로 헌법질서를 침해할 경우 정당 해산 사유가 성립함. 국민의힘이 지난 1년간 보여온 내란 행위 비호, 공무집행방해, 내란 미화, 극단적 선동 등 일련의 행태는 이러한 위헌 정당 판단 기준을 충분히 충족함.

마. 조국혁신당은 2025년 1월 5일 국민의힘 해산 제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7월 16일에도 동일한 취지의 진정을 다시 제기하였음. 그러나 법무부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해 왔음. 정부가 이러한 위헌적 행태를 방치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바. 지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내란의
구심이자 비호세력인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함. 국민의힘과 같은 위헌적 정당이 정치조직 형태로 존속하
는 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제거될 수 없음. 따라서 국민의힘
해산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공화국의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
라 할 것임.